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의안 번호	25-157
----------	--------

2025. 12. 1.
전문위원 신준호

1. 제출경위

- 가. 제출자 : 마포구청장(깨끗한마포과)
나. 제출일 : 2025. 11. 14.
다. 회부일 : 2025. 11. 18.

2. 제출이유

본 조례의 제명 등 환경미화원 명칭 변경, 존속기한 연장, 기금 운용규정 등을 정비·보완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제출됨.

3. 주요내용

- 가. 조례 제명 변경
-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 나. 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2조의2)
- 2025년 12월 31일 → 2030년 12월 31일(5년)
- 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당연직 위원 '예산정책과장, 교육청소년과장'을 '예산정책과장'으로 하고 민간전문가위원을 2명에서 3명으로 규정
(안 제3조의2)

라. 위원회 위원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규정 신설(안 제3조의3, 안 제3조의4)

마. 위원회 의결요건과 회의록 작성·비치 의무 규정(안 제3조의6)

바. 인용 상위법령 수정(안 제4조제2항)

- 「지방재정법」 → 「지방회계법」

사. 기금 대여대상에 대해 관계 법령에 근거하도록 명시(안 제5조)

아. 대여제한대상 학교였던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삭제(안 제6조)

자. 채권보전과 관련 의무보증인 규정 삭제(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2) 「지방회계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출

다. 기타

1) 행정규제심사 결과 : 원안 동의

2) 부패영향평가 결과 : 개선 권고

관계 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선의견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등이 자격기준 등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기금의 대여대상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로 수정 반영 권고

3) 성별영향평가 결과 : 개선사항 없음

4) 입법예고 : 2025. 10. 10. ~ 2025. 10. 30. (의견 있음)

- 환경미화원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타 조례 병행 정비

- 위원 수 및 당연직·민간위원 비율 조정

5.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배경

- 현행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는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과 자녀 학자금 대여절차를 규정하여 환경미화원의 복지 증진 도모 차원에서 제정된 조례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이 5년 단위로 재연장되어야 하는 사유와 '서울특별시 노사 단체협약'에서 서울특별시장과 노동조합 위원장이 합의한 대외직명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 등의 사유로 제출 배경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임.

나. 주요 조문 검토

- 조례 제명 및 관련 조문에서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2016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체결된 '서울특별시 노사 단체협약'에 근거한 것으로, 협약의 기타 합의사항 제4호에서 "신분증 및 각종 증명서 발급 등 대외직명을 공무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해당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명칭 정비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 금번 개정안의 '환경공무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직책 명칭으로서, 서울시 노사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약 14개 구에서 사용 중임. 그러나 협약 내용에서도 명칭 사용을 "신분증 및 증명서 등 대외직명"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는 법령상 공무원 직급이나 법정 용어처럼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안 제2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법정 기금을 제외한 기금의 유지가 필요할 시 5년 범위 내에서 연장하도록 한 근거로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위반되지 않음.
- 본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근로자 복지증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정책적으로 타당성은 인정됨.
- 기금 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기금조성액 약 10억원, 기 대여금 약 8,600만원(조성액의 8.6%), 현재 보유액은 약 9억 6,000만원으로 대여금 집행률이 10% 미만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대부분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음.
- 이 같은 사항을 볼 때,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으로 조직의 안정성에 기여하고 근로자 복지 수준 향상에 효과가 있어 기금 목적성은 인정되나, 재정 운용 효율성 측면에서 집행액이 낮아 유휴자금이 과다하고 이용 대상자 범위와 대여조건이 제한되어 실수요가 낮은 것으로 판단됨. 장기적으로 보유액이 지속될 경우 기금 존치의 타당성이 저하되고 재정 활용 효율성이 경직될 우려가 다소 있으므로 기금 존속 타당성 평가 등을 통한 기금운용의 효율화를 이루어야 하겠음.
- 안 제3조의2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의 위원 위촉에 관한 인원 조정은 지난번 우리 위원회 기금 관련 조례 심의 의결 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한 당연직 조정과 민간위원 조정으로 별다른 이견 없음.
- 안 제3조의3, 안 제3조의4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은 위원회 심의 시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규정한 것으로 이해됨. 다만, 「서울특별시 마포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4호 이미 동일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동일 내용의 반복 규정은 입법기술상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5조 '대여대상'의 조건은 조문의 명확화 차원에 법령을 명시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의견 없음.
- 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채권보전'의 기정 조문은 대여금 상환 불이행 시 보증인을 지정하도록 하여 채권의 보전수단을 확보했으나, 이를 삭제하여 대여금의 회수조치나 행정상 채권관리 근거가 없어지게 됨.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도 기금운용의 회수·보전 절차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적인 공백 사항이 발생됨. 비록 실제 보증인 선정 사례도 없고 「민법」 상 의무보증인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기금 대여금의 회수 및 채권보전에 필요한 조치는 필요하므로 조례 내 문언을 삭제하더라도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거나 시행규칙 및 내부지침으로 구체적인 회수·보전 절차가 마련돼야 하겠음.

다. 종합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기금의 합리적 운용 체계를 유지하면서, 법령체계의 현행화와 기금 존속기한의 연장,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그 입법취지는 타당함.
- 다만,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규정은 이미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서 모든 위원회를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에 중복하여 규정할 경우 체계 혼선이 우려됨. 이에 따라 준용 규정으로 갈음하거나 상위 조례에 근거를 명시하는 형태로 조문 정비가 필요함.

- 아울러, 채권보전 조항의 삭제는 비록 대여금의 연대보증 성격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라 하더라도, 그에 따른 대여금 회수 및 채권보전 조치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게 되어 집행상의 근거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구청장이 대여금 회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위원회의 설치내용) 구청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나 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 및 기능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 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구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가·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